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396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교육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5호	정혜경의원	2024.6.17.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7.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601호	문정복의원	2024.6.18.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7.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2793호	서지영의원	2024.8.1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7986호	김태호의원	2025.2.7.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1348호	고민정의원	2025.7.8.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3688호	김문수의원	2025.10.23.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4666호	강경숙의원	2025.11.2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5.12.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8.)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5. 12. 9.)는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규모가 큰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되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마.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학교·여건 등을 고

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안 제15조의2 신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으로, “학생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양교육”을 “영양·식생활교육”으로, “계승·발전”을 “계승·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의2제3항”으로,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기준”을 “및 인력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 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

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

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식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계승 · 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
-----.

<삭 제>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 · 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 · 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관한 사항

	<p><u>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u></p> <p><u>7. 그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 ----- ----- -----.
1. <u>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u> 2. · 3. (생 약) ② ~ ⑤ (생 약)	1. <u>제3조의2제3항</u> ----- ----- <u>시행계획</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학교급식 시설 · 설비 기준 등	제2장 학교급식 시설 · 설비 및 인력 기준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 -----

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
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
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 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

-----.
-----.
-----.
-----.
서 삭제>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4) ----- 제2항

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 설>

— — — — — .

⑤ 제4항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⑦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
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
준을 수립한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
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신 설>

<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 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